[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4. 13.>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22조의2제2호 참조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품목	품목단위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 별도첨부 가능	
신청의 구분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Ⅲ)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첨부서류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 고

품질제품검사 (Ⅰ), (Ⅱ), (Ⅲ)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제품검사 구분	검사주기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	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Ⅰ)	1월 1회	1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Ⅱ)	3월 1회	6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Ⅲ)	6월 1회	12월 1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